

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6. 8. 11.(목) 09:35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김재홍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39차, 제4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 확인

- 제43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3건, 제44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⑦ 의결사항

가. 2017년도 종합편성·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(안)에 관한 건 (2016-45-162)

- 2017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 -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안, 심사항목 및 배점, 재승인 여부 결정 등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고,
 - 주요 내용 '나'의 심사 기본방향에서 '품격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제공·조화로운 방송 편성'을 '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'으로 수정하고,
 - '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'를 두 번째 동그라미 중점 심사 앞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함

나.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6-45-163~173)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(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)제1항,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제1항, 제29조(개인정보의 파기)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3(과징금) 및 제76조(과태료)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(안)을 박노의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 -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한 (주)우아한 형제들, (주)직방, (주)스테이션3, CJ CGV(주), (주)씨제이오쇼핑, (주)지에스홈쇼핑, (주)현대홈쇼핑, (주)우리홈쇼핑, (주)엔에스쇼핑, (주)홈앤쇼핑, (주)공영홈쇼핑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제64조(자료의 제출 등)제4항에 따라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하고,
 -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동시에 위반한 (주)스테이션3, (주)지에스홈쇼핑, (주)현대홈쇼핑, (주)우리홈쇼핑, (주)홈앤쇼핑 등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2,000만원, (주)엔에스홈쇼핑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 -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를 2개 이상 위반한 (주)우아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50% 가중하여 1,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 - 위반사항이 1개인 (주)직방, CJ CGV(주), (주)씨제이오쇼핑, (주)공영홈쇼핑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1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
-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(주)우리홈쇼핑에 대해서는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, 대검찰청 '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'에 조사결과를 이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「방송평가 세부기준」 개정에 관한 건 (2016-45-174)

- 지난 7월 21일 전체회의에 주시청시간대 편성평가 내용 중 보도분야 기준 45%의 추가 논의를 위하여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보도평가 기준 45%를 42%로 새로이 설정한 「방송평가 세부기준」 개정에 관한 건을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 원안대로 의결함

라.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6-45-175)

-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 [별표]의 적용일을 2016년 7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하기 위한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을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 원안대로 의결함

㉠ 보고사항

가. 「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서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「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」 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관련 매출액은 위반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는 등의 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하고,
 -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함

나. 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최초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10%를 감경하고자 하는 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」 일부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함

다. 「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 이통사 그리고 유통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% 요금 할인의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·게시하도록 해당 고시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「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」 일부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함

라. 「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」 제정(안)에 관한 사항

- 방송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기 위해 「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을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함

㉠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8월 18일(목)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20)